

고성군주민감사청구인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62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 3. 23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00. 3. 23

다. 상정·의결일자 : 2000. 3. 29

총무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이유

-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자치법(제13조의 4)에 의거 주민감사청구제의 시행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이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총수의 범위 지정(안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 20세이상 주민수 총수의 50분의 1 범위안에서 서명으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군민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지방자치법의 내용에는 감사청구인 수가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한 사유는
- 답 : 지방자치법에서는 50분의 1 이내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근 시군 형평성에 비추어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였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0. 3.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